

제351회 임시회
2016. 10. 07.(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9월 27일
- 회부일자 : 2016년 9월 28일

3. 제안이유

-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명 칭 : 충북여성재단
- 이 사 회 : 이사 15명 이하(이사장 : 도지사), 감사 2명
- 사 무 처 : 12명(사무처장, 2팀 1센터) * 대표이사(비상근)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내 사무 공간 활용
- 출연계획 : 1,135백만원
 - 기본재산 : 100백만원
 - 사무환경 조성 : 100백만원
 - 운영재원(매년) : 935백만원('17년 기준 추정액)

· '17년 당초 : 200백만원(기본재산, 사무환경 조성 등)

· '17년 추경 : 935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운영재원은 추경에 여성발전센터 예산 삭감·조정하여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

○ 주요기능

-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개발 사업
-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사업
- 여성의 문화 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5. 검토의견

○ 법적 근거 및 계획안 내용

-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
- 동 계획안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같은 법 제20조(재정지원),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3조(재산 및 운영경비) 및 같은 법 제8조(재정지원 등)에 따라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의 법적 절차는 적정함

○ 검토결과

- 충북여성재단은 충북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자율성·다양성·전문성을 가진 민간 주도로 일·가정 양립정책 등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개발을 지원하며,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재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충청북도가 여성재단에 대하여 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동 재단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나 재단운영이 필요한 경우 출연금 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 충북여성재단이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양성평등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여성정책연구 및 충청북도의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 충북여성재단 출연을 위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보임.
- 다만,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충북여성재단 연도별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17년)	2차년도 (‘18년)	3차년도 (‘19년)	4차년도 (‘20년)	5차년도 (‘21년)	계
세 입		1,261,000	1,090,000	1,119,000	1,149,000	1,179,000	5,798,000
국 비		76,000	78,000	80,000	83,000	85,000	402,000
출연금(도비)		1,135,000	952,000	969,000	986,000	1,004,000	5,046,000
기타(사업수입)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350,000
세 출		1,161,000	1,090,000	1,119,000	1,149,000	1,179,000	5,698,000
시설비및자산취득비		100,000	-	-	-	-	100,000
인 건 비		469,000	481,000	496,000	510,000	526,000	2,482,000
일반운영비		106,000	88,000	88,000	91,000	91,000	464,000
사업비 등		486,000	521,000	535,000	548,000	562,000	2,652,000
재원 조달		1,261,000	1,090,000	1,119,000	1,149,000	1,179,000	5,798,000
의존 재원	소 계	76,000	78,000	80,000	83,000	85,000	402,000
	보조금	76,000	78,000	80,000	83,000	85,000	402,000
자체 수입	소 계	1,135,000	952,000	969,000	986,000	1,004,000	5,046,000
	지방세	1,135,000	952,000	969,000	986,000	1,004,000	5,046,000
기 타 (사업수입 등)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350,000

※ 국고보조금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비, 기타 : 공모 및 연구용역 수입

※ ‘17년도 세출예산 : 100백만원(기본재산 적립금, 최초 출연)

② 타 시도 여성재단 설립 현황

시도	재단명	설립년도	이사장	대표이사	직원수	초기 자본금 (억원)	'15년 운영비 (억원)	사업소 유무	사무(재단)
									사무(사업소)
서울	서울여성 가족재단	'07	민간인 (비상근)	대표이사 (상근, 3년)	50명	0.01	40	무	연구,교육
									-
부산	부산여성 가족개발원	'02	행정 부시장	원장 (상근, 3년)	20명	15	28	무	연구,교육
									-
대구	대구여성 가족재단	'12	행정 부시장	대표이사 (상근, 3년)	12명	2.5	12.6	무	연구,교육
									-
인천	인천여성 가족재단	'13	행정 부시장	대표이사 (상근, 3년)	27명	1	12	무	연구,교육
									-
광주	광주 여성재단	'11	시장	대표이사 (상근, 2년)	23명 (사무총장)	38	17.5	유	연구,교육
									1366여성새로 일하기
대전	-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역할 수행							유	연구,교육
									취창업, 양성평등
울산	울산여성 가족개발원	'15	행정 부시장	원장 (상근, 3년)	9명	3	5	무	연구
									-
경기	경기가족 여성연구원	'04	사회통 합 부지사	원장 (상근, 2년)	46명	0.1	30	유	연구,교육
									취창업, 양성평등, 새일사업
강원	한국여성 수련원	'08	행정 부지사	원장 (상근, 3년)	14명	0.1	27	유	교육
									연구
충남	충남여성 정책개발원	'99	행정 부지사	원장 (상근, 3년)	18명	5	16	무	연구,교육
									-
전북	전북여성교육 문화센터	'05	행정 부지사	센터장 (상근, 2년)	18명	0.5	12	무	연구,교육
									-
전남	전남여성 플라자	'09	행정 부지사	원장 (상근, 3년)	15명	0.5	12	무	연구,교육
									-
경북	경북여성 정책개발원	'97	도지사	원장 (상근, 3년)	19명	4	10	무	연구,교육
									-
경남	-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역할 수행							유	연구,교육
									교육,상담
제주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14	행정 부지사	원장 (상근, 3년)	11명	10	10	유	연구
									교육,대관

※ 재단 설립 13개 시도, 지역발전연구원에서 재단기능(연구) 수행 2개 시도, 사업소 1개 시도(충북)

관련규정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3조(재산 및 운영경비)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충청북도(이한 “도” 라 한다)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3. 제9조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